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17 _ 2014년 07월

CONTENTS

02	이미지 단상	장애인 휠체어 그네
04	편집자 편지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06	칼럼	6·4 지방선거와 장애인의 정치참여
09	이 사람의 향기	앞으로 4년, 쉬지 않고 희망을 달리겠습니다.
17	포커스 01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규정의 위헌성
21	포커스 02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6	포커스 0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채택심의 활동의 의미와 전망
30	의정돋보기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32	현장에서	정부의 예산부족 타령에 죽어가는 장애인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34	서평	사람에 대한 연구와 고민없는 장애학은 공학적 논리일 뿐 -『장애학의 쟁점』
36	씨네평론	유한하지만 무한한 행복이 있는 삶-〈피아니스트의 전설〉
38	일상의 공간에서	마음 일기 - UCLA에서의 마지막 수업
40	부록	6·4 지방선거 광역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지난 6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에 78번째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2003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 - World Blind Union)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 에서 논의가 시작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상설위원회(SCCR)' 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하면서 2013년 6월 27일 국제조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의 주용 내용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대체자료는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동법 33조의 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게 등),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도서관법 제13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국립장애인도서관 데이터자료 제작지침 등이 마라케시 조약관련 국내 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라케시 조약의 제정의미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무를 국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대상을 맹인(Blind),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또는 인지(perceptual) 또는 독서장애(reading disability)가 있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거나, 독서가 어려울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사람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마라케시 조약 제3조 수혜자/Beneficiary Persons) 또한 이를 제공할 수 있

는 승인된 기관으로 정부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로서 주요 활동 혹은 기관의 의무의 하나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마라케시 조약 제2조 정의 c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마라케시 조약의 기준은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체자료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단체 및 복지관에서 일부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내용을 대체자료로 변환 보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보급과 관련한 기능의 확대, 예산의 증액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해 대체자료 대상의 선정 등에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정보접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마라케시 조약의 제정과 한국정부의 서명과 기준을 통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이 장애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4년 7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이석구

6·4 지방선거와 장애인의 정치참여

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지체장애인

세월호 참사의 막막한 사회 분위기 아래 전국적으로 치러진 6·4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비록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과 소외를 깨치기 위해 6·4지방선거에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이번 6·4선거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장애인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이고 이는 정치변화와 쇄신만이 당사자의 바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물리적, 사회적 환경들이 정치를 통해서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을 당사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방식이다. 시민으로써의 정치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시민들의 행위(Huntington & Nelson, 1976), 사적 시민들이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하고자 기도하는 일체의 행동(Mibrath & Goel, 1977) 이라고 정의¹⁾ 되어 왔다. 또한 정치참여의 방식도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정치적 개입(political engagement)’ 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vity) 등의 개념이 혼재²⁾되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장애인들도 이와 같이 정치적 개입과 활동,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 남정휘(2006). 『장애인의 정치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2) 김현철(2013). 『정치정보습득관련 미디어 레퍼토리와 정치참여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지난 4월 16일 개최된 420장애인대회. 장애인 정치참여보장이 주요 이슈였다(사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420장애인대회에서 6·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신형기표대에 휠체어이용자가 투표를 하는 시뮬레이션 장면, 기표대 가로폭이 비좁아 장애인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 휠체어가 진입하자 사이즈가 좁아 기표대 가로차단막이 좌우로 벌어지는 모습(사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계는 그동안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라는 어젠다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당사자들을 결집시켰다. 특히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열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등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원으로 진출하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강렬해졌고, 결국 정당의 비례대표로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을 내는 획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선거연대와 정책연대 결성을 통해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개발, 정리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으로 부터 답변을 얻어내고 더 나아가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협약까지 받아내었다. 장애인계가 만든 정책공약의 질은 차치하고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수렴하고 이를 지방자치에 반영하겠다는 거버넌스의 틀은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들의 관심은 여전히 장애인 정책 보다는 그 상징성에 있어 보인다. 가령 정당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결정할 때 장애계의 의사와 상관없는 명망가 중심으로 선정한다든지, 여전히 장애인들은 시민유권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상징하는 수혜자의 이미지로 부각시킨다든지 여러가지 정치계의 황당한 꼼수가 존재한다. 특히 비례대표에 장애인 당사자를 선순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당이나 장애인계에서 가장 논쟁과 갈등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비례대표 장애인 10%할당제의 불발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연대가 추천하는 당사자의 공천 난항 등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들에 의해 갈등만 증폭되고 오히려 장애인 정치참여의 참된 목적까지 왜곡되는 진풍경이기도 했다. 특히, 정치계에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장애인계가 합의해서 뽑은 적합한 당사자를 그곳에 보내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기도 했다. 이는 장애인 시민운동을 개인적 야심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장애인 내부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혼돈이었다.

그 사이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했던 당초의 계획은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과연 장애인들의 정치참여가 장애대중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장애인들도 많았다. 차별받고 가난한 장애인을 이용하여 정치적 쇼를 벌이는 주류사회의 장단에 굳이 몸 바치고 놀아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자괴감도 든다.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쯤 되면 정치권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한 면이 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풍경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직관만으로도 알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상 이 지면에서 그 원인을 일일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인분석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원인은 명약관화하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의 정치도 변해야만 국가가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변하지 않으면 장애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동력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선거연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장애인시민단체와 정당의 공정성 있는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대표로 의회에 들어간 의원들은 장애인 정책 발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또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즈음에도 자진해서 의정활동 성적표를 만들어 자신이 임기 내 복무했던 의정활동의 공과 화를 열거하며 후배 당사자를 위해 밑거름을 삼아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회활동은 본인의 야심보다는 장애인 모두의 명예가 될 때 진정 가치가 있고 더욱 더 영예로울 것이다.

앞으로 4년, 쉬지 않고 희망을 달리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김익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2013.11)에 참석한 우창윤 당선자
(맨 우측, 당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이번 소식지 인터뷰는 우창윤 서울시의원 당선자(비례, 새정치민주연합)다. 우당선자는 1963년 충남 태안군에서 태어나 경북 영주시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 수료 후, 건축가로 활동했다.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양하지 장애를 가진 까닭에 건축설계 부분만큼이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랜드 그룹 건축부문 대표와 하우도도시건축연구소장을 거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KBS3라디오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하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로 사람 운명은 참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권유로 나서게 되었고 또한 장애계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비례후보로 추천되었고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직을 맡은 것도 제가 원하거나 욕심 부린 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장애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으니 장애인들의 인권,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전공이 건축학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859)는 현대건축의 대가인데요, 그의 작품은 기하학적 조형이 특징이지만 그 바탕은 자연친화적인 유기적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외관은 건조해 보이나 동시에 주변환경에 거슬리지 않는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건축에서 이런 절묘한 균형감을 이끌어내는 솜씨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치도 비유컨데 그러한 상이한 요소들의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많은 이견과 갈등을 접하실 텐데요, 막연한 감은 있지만, 의정활동에서 조화와 균형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가는 흔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유됩니다. 건축 디자인은 건축주, 각 전문분야 기술자, 시공자, 공무원, 심의위원회 관계자, 민원인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조정이 항상 벌어지는 정글 속을 헤쳐 나가 건축가가 계획했던 곳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계의 경험은 의정활동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현안에 장애당사자들간의 이견, 서울시청 관계자들과의 갈등 가운데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장애계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수자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여 지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서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의 자문을 거쳐 정책화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Q 우당선자님의 이력으로 보건데, 아무래도 도시건축설계 분야에 관심이 가실 듯 합니다. 당선자님이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의 상은 무엇입니까? 배리어 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전제할 때, 과연 도시인에게 건축물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 니 도시란 무엇입니까?

“신은 세상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란 말이 제 생각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주택은 개인의 삶을 담은 그릇이고 도시는 사회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거기에 담겨지는 음식이 달라지 듯 우리는 건축과 도시라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또한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건축은 사적 공간이며 동시에 공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철저히 공공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외국인,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동하고, 쉬고, 즐기고,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범죄예방과 재난 등에 대비하여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여야 합니다. 가끔 이런 공공성을 망각하고 일부만을 위해 특히 디자이너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 설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공적 공간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과 기능에 충실함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아름다운 건축과 도시란 인간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봅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많은 도시들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울을 누구나 살기 좋은 유니버설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Q 이제 공약을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플라자 건립을 언급하셨는데요, 기존의 복지관 중심에서 종합회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또 장애인플라자에 반드시 구현하고 싶은 원리와 설계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되었기에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복지관처럼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기다리는 서비스’에 치중하고 엄청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효율성과 효과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장애인 종합회관’은 복지관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이 운영을 주도하여야 하며, 장

애인 계몽 및 재활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발적 참여와 통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플라자에는 장애인평생교육원,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지원센터,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장애인기업/단체 인큐베이팅 센터,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등이 입주하여 장애인종합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플라자는 기존 정보화진흥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합니다. 지어진지 거의 40년 정도 되었기에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환기나 채광을 위해 가운데 부분을 들어내어 상부에 천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픈된 공간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전과 피난에도 중점을 두어 재난시 피난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것입니다. 장애인 숙박시설을 두어 각종 행사나 교육, 연수시 장애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작은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두려 합니다. 안내사인을 체계화하여 누구나 실내공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턱을 없애 무단차로 하여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은 추위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단열성능을 보강하여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활동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Q 장애인관련 조례 제·개정 활성화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요?

서울시의회, 서울시,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장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조례제개정위원회’에서 해당 서울시의 모든 조례들을 모니터링한 뒤 문제조항을 구의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서울시의 조례 중 개정되고 있지 않은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개정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용어들도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폐질’, ‘정신지체’, ‘불구’, ‘정신이상’ 같은 용어들을 오늘날 기준에 맞게 공식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질, 불구는 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은 정신장애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Q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장점이 지속적으로 전달된다면, 지지와 호응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축될 때, 가장 시급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 핸드사이클로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종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의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점, 도로휴게소, 식당, 호텔 등에는 1층 출입구에 턱이 전혀 없고 화장실 이용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에는 장애인을 위한



일본의 편의점 화장실들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서 이번 종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은 아마구치현 슈난시 편의점 화장실 모습.

객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면적은 2개의 객실을 합친 만큼의 크기임에도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 반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건물에서 1층 주 출입구에는 계단을 없앨 것입니다. 계단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요원합니다.

공공건물과 복지시설 등의 신축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커피숍, 식당, 은행, 의원, 편의점 등)의 접근성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장애인이용 편의성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도 50%까지 높이고 지하철 승강장의 높이차와 간격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작년 8월 도쿄-후쿠오카(1,950km), 부산-서울(580km)를 손자전거로 종주했다 하셨는데요. 일본 종주의 경우 현지 장애인들도 무리라고 한사코 말렸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완수하신 남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계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자전거(핸드사이클)을 접하고 건강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매력에 빠져 미친 듯이 열심히 하여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2013년 5월엔 저를 포함한 장애인 5명이 부산 낙동강 하구둑을 출발하여 낙동강, 이화령, 남한강을 따라 종주하여 서울 잠실운동장에 도착해 전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그 해 8월 42도의 폭염가운데 아시아인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일본종주 1,950Km를 완주하였습니다. 장애인도 해낼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많은 분



일본 손자전거 여행중 구라시키시 도로변에서

들이 성원과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의 종주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길 위에서 나를 보다』(올벼 출간)가 얼마 전에 출간 되었습니다.

사격, 휠체어테니스 등도 접해 보았고 자연스럽게 장애인체육계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설분과위원장으로 전국의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점검을 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덕에 2011년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전국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경기하는 데 큰 불편 없이 치를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17개 경기장도 제가 컨설팅을 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서울시장애인사이클연맹 회장을 거쳐 박원순시장님이 당선하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에 시간당 1리터의 땀을 흘리는 손자전거 종주. 후쿠야마 중앙공원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 우창윤 당선자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2012년 7월에는 서울시청 장애인탁구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각 구청을 방문하여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현재까지 9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활동중입니다.

Q 최근 중증장애인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개선방안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지난 5월 호흡기 장애인 오지석씨는 혼자 있는 동안 호흡기가 빠져 호흡을 못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고 얼마 못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것이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근육장애인 등은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기를 떠나 인간생명이 존중받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서울시내 II센터를 많이 방문하여 소장님 이하 직원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장 시급히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은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회가 개원하면 올 하반기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 시간을 갖고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제에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점차 개선해야 합니다. 가령 기존 복지관의 재활위주의 프로그램운영 방식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직업 교육, 건강관리, 평생교육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관 직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당사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하고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 의결기구에 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생활시설의 인권 개선과 탈시설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인권센터 등에서 동료상담가(또는 인권 지킴이)를 고용하여 시설에 파견하여 인사업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서 시설의 인권상황도 점검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 상담을 통해 탈시설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Q 이제 4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중주하시어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니터링센터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규정의 위헌성



글 권오용 변호사/사회복지사(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1. 2014헌마22 헌법소원 청구

2014년 1월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3항의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직의 이성재 대표변호사와 배금자 변호사, 엄형국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으로서 청구인 박모 외 3인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모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이 강제로 입원되었던 근거가 된 법령인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므로 동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 청구의 취지였다. 정신보건법(법률 제8939호로 2008. 3. 21.에 개정된 이후의 법률)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합니다)는 청구인들의 의사능력과 정신과 치료가 현재 필요한 정도에 상관 없이 청구인들의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의뢰하면 즉시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입원을 당하도록 허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¹⁾과 명확성 원칙²⁾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소원 각하와 위헌심판제청 결정

그런데 위 2014헌마22호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요건심사를 담당한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재판장 이정미)들은 법률이나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심판을 받으려면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한 집행 행위가 없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동법률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요건미비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³⁾

그러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던 변호인단과 자문한 헌법학자들은 기존 헌법 판례에 의하더라도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에 대한 구제 절차가 현실성이 없고 입원행위 자체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한 바 있었고 위 현재의 결정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지난 1월 14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피해근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정신보건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사진 에이블뉴스)



- 1)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경우’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사적 이익의 제한과 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편집자 주)
- 2) 헌법상의 기본권과 자유 규제원칙중 하나로 영미권에서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이라고 칭한다.(편집자주)
- 3)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위 법률조항(정신보건법 제24조) 그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 헌법재판소의 벽’, 2014.03.12, 기사인용)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인이었던 박모씨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절차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초기408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하여 2014년 5월 14일자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3. 향후 전망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심판제청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적법 절차에 위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14, 제25조에 의할 때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를 허용하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부록>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3.4.]

【전문】

사 건 2014헌마2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애 2. 진○진 3. 김○형 4. 이○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박혁, 이민영, 홍성철, 김상채, 김광수, 고일영, 최우현, 서일교, 조하영,
박민선, 김지성

변호사 배금자, 엄형국, 장서연, 박영아, 황필규, 윤지영, 차혜령, 서영현, 김예원, 이민규, 최정규, 권오용, 김명철, 민주경, 선아름

결정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보호의무자의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퇴원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의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제도개선이 시급하다¹⁾



글 김의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장애인 참정권 제한은 여전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사분기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시행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제도 연구’ 결과발표(‘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는 그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표] 장애인 참정권 제한 법률 현황

(2014. 05. 기준)

주제	관련법	문제사유
I.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공직선거법 65조제4항	의무조항이 아님, 점자형과 책자형 면수가 동일하여 점자형공보물 정보량이 제한됨
II.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공직선거법 122조의2제3항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 지원이 없어 장애인의 피선거권이 제한됨
III. 선거방송 수화·자막 제공	공직선거법 70조제6항, 72조제2항, 82조의2제12항	수화·자막 제공이 임의조항이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됨
III. 선거방송 수화·자막 제공	공직선거법 70조제6항, 72조제2항, 82조의2제12항	수화·자막 제공이 임의조항이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됨
	국민투표법 30조제1항, 31조제1항	

IV. 거주시설 거소투표	공직선거법 38조	거주시설 부정선거 방지책을 규율해야 함
V. 투표소 접근성· 편의제공	공직선거법 6조제2항*	편의/접근성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없음
	국민투표법 51조제3항	
	주민투표법 제2조제1항	
VI. 선거정보 접근성	주민투표법제4조제1항	정보접근/편의제공 조항이 없음
VII. 신형기표대 가로폭 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보조인 동반 장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려면 기표소 규격을 규율해야 함.
※ '장애인' 권리 명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독일 기본법처럼, 국민이 장애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항 신설



장애인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5.22)

I~VI 처럼 해묵은 문제들이 존치중이며 VII는 이번 선거부터 시행된 신형기표대가 야기한 문제다. 또 선거정보 접근에서 시각·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이 별도로 필요한데 기존 법률에는 관련 조항이 아예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선거접근 보장은 교통편의 제공에 국한된다(6조제2항).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괄조항이 있지만(27조제1~3조) 인권위원고를 포함, 법이 공직선거법에 미치는 효력이 미비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에 보장방안을 추가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들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도 대개는 명시적이지 않다. 이는 선거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와중에 우발적인 판단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침해하는 토양이 된다. 사실 중복입법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이 제안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장애인 참정권 문제는 적용 가능한 '법의 과다'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기보다는 도리어 '법의 부족 내지 미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지금 시점에는 여전히 보다 충분한 장애인 참정권 관련 법 조항의 신설 내지 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 및 조항신설을 위해 이번 연구는 선진국 법체계와 사례(독일·미국)를 검토했다. 먼저 독일은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3조²⁾에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 하위 법령(연방선거법 및 동법시행령)을 규율하는 근거로 삼는다. 연방선거법은 투표용지 기입 및 투입이 어려운 신체장애인의 투표보조인을 허용하며(33조, 57조), 한국에서 문제되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연방정부 지원으로 위탁 제작하고 있다(45조·50조). 또 장애인은 선거인명부 등록과 투표통지서 교부신청 및 우편투표 시 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18조·27조·66조).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46조)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 점도 우리와 다르며, 특히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46조)는 규정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³⁾ 또 몇 년 전부터 장애인정책 관련 정부의 (홍보)발간물을 제작할 때 기본형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적장애인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형별 대상별 정부발간물 제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장애인과 노약자도 고려하지만, 광대한 국토면적에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문맹율, 해외파병 군인 등 고유한 특성이 있어, 선거 취약계층을 위한 투표지원책이 우리보다 광범위하고 그 대상층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헌법 수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역동성이 있다. 일례로 미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14조는 “모든 주는 ... 주 관내 모든 주민들에게 법률들이 보장하는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선거 과정에 적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투표 연령과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후견 상태에 있는 유권자들을 다른 주민들과 다르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메인 주가 정신질환 때문에 후견을 받고 있던 장애인의 투표권을 금지하자 연방대법원은 장애인이 투표권을 박탈당하기 전에 박탈의 사유에 대한 적절한 고지도 없었고 청취의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절차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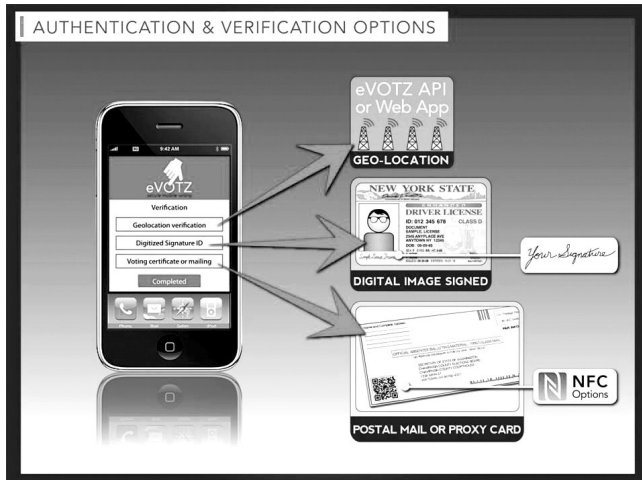
- 1) 이 글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제도 연구' 결과물('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2014, 기현석, 김의수, 남용현, 윤상호 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출간) 전체를 축약한 것이다.
- 2) 기본법 제3조, 누구도 성(性), 정치적 성향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3) 독일 연방선거법 제46조(투표소)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기관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연방법인 ‘미국선거지원법’은 선거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기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그 밖에 우편투표, 사전투표가 시행되며, 투표소 밖 투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사전투표에도 적용되며 신체장애로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거나 줄 서서 오래 대기할 수 없는 장애인은 선거 관리 사무원에게 투표기기를 자신의 차량 또는 투표소 입구에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여 투표소 밖에서 기표할 수 있게 한다. 또 당사자가 원할 경우 친구나 친지가 대신해서 기표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다양한 법체계와 정책들을 상세 기술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선거지원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 선거를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이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 산마테오 카운티가 운영 중인 이슬레이트(eSlate) 시스템은 모든 유권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독립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이다. 이슬레이트는 미국선거지원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치이며, 사전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작되었기 때문에 개발된 투표 기구 중 사용자 친화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각장애인과 문맹자를 위한 헤드폰, 지체손상자를 위한 젤리 스위치, 전신마비 장애인을 위한 입으로 조종하는 선거도구 등 유형별 장애인들의 투표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투표제도(Mobile Voting)’도 인상적이다. 이 제도는 선관위 공무원이 장기요양시설 등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하는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부정선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참관인들도 동석한다. 이것은 원래 여론조사 기관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 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투표화면. GPS를 이용한 단말기 위치정보 확인, 투표인 신원 체크, 단말기 기표 순으로 진행된다.

론조사를 하기 위해 개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Mobile Polling) 방식을 선거에 응용한 것이다. 2008년 총선거 당시 버몬트 주에서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유권자는 물론이고 선관위 공무원과 시설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가장 큰 쟁점은 ‘거주시설내 거소투표제’와 ‘민법상 제한

받는 장애인의 선거권 박탈문제’로 수렴되었다. 미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투표제도는 거주시설 거소투표 문제에 응용할 만 하다. 또 성년후견제를 시행하는 우리로서는 미국 연방법원 관례(메인주)의 원칙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법과 참정권은 제약하는 권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의 기준이 그대로 참정권에 준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지엽적인 사례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 법체계와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선거권 보장방안에 대한 접근들과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거소투표제와 선거권 박탈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채택심의 활동의 의미와 전망



글 정은주 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47여개 국가가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협약을 비준하여 현재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14년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NGO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인 27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2013년 4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를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약 조항들을 묶어 6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그룹별 해당 조항과 주요 자료들을 학습하였다. 또 다른 국가의 NGO 활동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제장애연맹(IDA) 등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심의의 흐름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NGO보고서연대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2014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실효적 질의목록 도출 차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왔다. 대표단은 박미선(한국정신장애인연대, 제1워킹그룹 멤버), 정은주(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2워킹그룹 의장),

이석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유엔연대 부운영위원장), 김현철(한국농아인협회, 제4워킹그룹 의장), 박지은(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제5워킹그룹 간사), 이찬우(한국적수장애인협회, 제6워킹그룹 의장), 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 실무 및 통역), 김민정(통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인 김형식 위원, 모하마드 알타라네 위원, 테레샤 데게너 위원과 면담을 통해 주요이슈에 관한 로비활동을 펼쳤으며, 국제장애인연맹(IDA)의 빅토리아 리와 함께 공식 브리핑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가졌다. 또 알렉스 코트(IDA), 가보르 곰보스(전 CRPD 위원), 빅토리아 리(IDA)와 함께 합리적 편의제공 및 점진적 이행에 대한 IDA 워크숍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식 브리핑 시 발표시간 분배와 질의응답 관련 역할분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가보고관인 몬티안 분단 위원과의 면담에서 대표단은 13가지 이슈(①장애인복지법과 의료적 모델, ②차별적 규정, ③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 ④강제불입수술, ⑤정신보건법과 강제·장기입원, ⑥시설 인권침해, ⑦성년후견인제도, ⑧자립생활, ⑨통합교육과 평생교육, ⑩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및 낮은 임금수준, ⑪단순노동 편중, ⑫생활고, ⑬선택의정서 비준 및 유보 조항 철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분단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구제조치, 강제불입수술, 성년후견인제도 도입과정에서 DPO와 협의 여부, 보호작업장의 법적 근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 공식 브리핑에서 대표단은 분단 위원과 면담 중 제기했던 13가지 이슈를 발표문을 토대로 동일하게 제기했다. 발표 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 문제, 법률간 상충,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DPO 참여 관련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대표단은 적절하게 답변하였다. 이후 벨기에 공식회의도 참관하였다. 벨기에 NGO대표단은 거주시설, 통합교육,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관점, 인식개선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의와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졌다.

IDA 워크숍에서는 비차별과 합리적 편의제공, 고용 및 근로상황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 조항, ‘근로능력 기반’에서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으로의 전환, 대상자 선정과 장애의 정의 등이 소개되었고, 유럽의 긴축정책을 사례로 국가 자원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토론의 자리도 별도로 마련

되어 국가별 정신장애인의 인권현실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일반논평이 논의되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소통적 접근과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단의 활동 및 발표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이어져 뜻 깊은 일정이었다.

귀국 후 5월 14일에는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현지활동 개요 및 일정, 위원회 대상 활동 내용 및 성과, 국제장애인연맹(IDA) 워크숍 주요 내용, 제1차 질의목록 주요 내용, 질의목록 활용방법 및 전략을 소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는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논의를 통해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문제해결의 시급성 정도, 장애인 인권침해 상징성,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 현재 국내에서 이슈로 부상한 현안 등을 기준으로 주요 핵심이슈들을 선정하였고, 사전활동 및 제네바 현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NGO보고서연대에서 제기한 이슈들이 최종 채택된 질의목록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상 보장된 인권모델과 장애의 개념이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대한 설명 요청,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축소한 모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요청, 상법 제732조에서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조항이 있는 제25조 마항 관련 유보 철회에 대한 정보 요청, 장애인 관련 차별적 관행과 정책 및 법률을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철폐하고 개정하기 위해 채택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 요청, 2014년 1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정보 요청과 이 개정안이 어떻게 비자의적 입원·치료·감금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화학적·기계적 및 물리적 강박의 사용과 강제적 치료를 관장하는 법적 규제에 대한 정보 요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법적·행정적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및 이러한 조치에 장애여성과 소녀가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강제불임과 강제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에 대한 정보 요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 및 집행과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 요청, 성년후견제도가 법적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대체의사결정을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동 제도가 어떻게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개발된 단기적·장기적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 요청, 등급과 관계 없이 욕구와 필요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요청, 수화를 공식언어로, 그리

고 점자를 공식 글자체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와 이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 요청,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통합교육제도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와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 최저임금법의 이행과 어떻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관한 평가와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 국가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개선하고 장애인연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 요청,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로 간 차이 및 다양성과 관계없이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질의목록에서 NGO보고서연대가 제기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번 질의목록 채택심의 활동은 국가보고서의 심의에 앞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공식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한국 NGO의 입장을 전달하고 질의목록에 반영시킨 점, 장애인권리위원회에게 한국의 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제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채택되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의 질의목록 채택심의 활동이 중요하며, 연대에 부여되는 발언 및 활동기회를 활용하여 국내 장애인당사자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모두가 협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협약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차 국가 심의를 계기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에 실효성 있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 자료집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교통수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짐을 옮기는 데 쓰는 수단이다. 지하철은 비교적 단시간에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지하철은 쉽고 빠른 수단만은 아니다. 편리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지하철을 위협하듯 인식 하는 요인에는 지하철 단차가 있다. 특히 휠체어나 목발이 단차 사이에 끼이거나 빠지면 자칫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비해 늘 촉각을 세우고 위험을 동반한 채 이용한다.



승강장 높이가 커 사고가 잦은 1호선 대방역 (에이블뉴스)



승강장 자동안전발판기(연합뉴스)

다음은 지하철단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에서 박기열 의원이 지하철 곡선승강장의 자동안전발판 설치계획과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질의한 우수발언이다. 다행히 지하철 단차로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올해 서울시 지하철 중 곡선승강장이 있는 50개역에 장애인 등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된다. 자동안전발판은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센서와 연동돼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올라와 틈을 막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승강장과 전동차간 틈새에 안전발판을 설치해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이 빠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타시도도 참고할 만하다.

2013년 07월 0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교통위원회 제1차 발언 중

박기열 위원 저것을 동영상으로 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에는 지금 120개역 중에 곡선승강장이 몇 개나 되지요? 저기에도 지금 발빠짐 얘기가 나와요.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 직선이 제가 알기로는 59개고 나머지 61개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61개 역이 곡선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R이 400 이상인 것이 13개 역이고, 그래서 오늘 처음이 아니고 누누이 곡선승강장에 대해서는 발빠짐이라

든지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언론에서도 보셨지요?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박기열 위원

(중략) (자동안전발판기)하나 설치하는데 1,800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예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중략)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지난 4월 18일자로 서울시 교통약자용 교통시설물 대폭 개선 이 내용 중에 자동안전발판 설치 그다음에 열차와 승강장 틈새 휠체어 바퀴 빠지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중략)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까지 124개 곡선 지하철역에 두 대씩 설치할 계획이다.(중략) 혹시, 메트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잖아요?

(...중략)

박기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뒤따르는데 2015년도까지 124개 지하철역에 두 대씩 설치할 수 있어요?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

1개 역당 4개소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추 한 60억 가까이 소요될 텐데(중략)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곡선승강장은 어떤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 어린이 구분 없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설치된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그런 곡선승강장이 많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을 좀,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여기 계시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예산 요청하면 거부할 위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입장, 또 경찰병원 역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각 역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경사로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 턱이 높거나 턱이 안 맞을 경우 이런 경우 1회용 발판을 놔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어떤 지체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도래되면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 들어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동발판이든 1회성 발판이라든지 있어서 사고가 안 날 것을 없어서 사고 나면 인명사고는 사람 목숨을 잃고 나면 그것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조가 잘됐으면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예산부족 타령에 죽어가는 장애인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글 김선윤 은평늬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12년 호흡기를 착용한 허정석씨가 호흡기가 빠져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주영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 하였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주남매 사건이 일어났다. 뇌병변 장애인 동생을 누나가 돌봐주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어린 남매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한 상태여서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결국에 둘 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 모든 것이 물리적인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시간이 적어서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호흡기가 빠지고 화재가 나도 대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희생된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 정부에 활동지원제도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래서 확보한 것이 2급까지 포함하고 최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대상자였다. 그러나 같이 사는 가족이 1급, 2급 장애인이나 18세 미만 자녀나 65세 이상의 부모 만으로 구성된 경우만 적용 되었다. 그 조건 안에 포함되지 못한 최중증장애인은 여기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제외된 최중증장애인도 포함시켜 줄 것과 등급제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 2의 오정석씨, 김주영씨가 나오지 않게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1주기 추모제를 치룬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던 송국현씨가 화재로 돌아가셨다. 그는 3급으로 활동보

조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 충격이 가시기 전 호흡기를 착용한 오지석씨가 호흡기가 빠지는 바람에 혼수 상태로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희생당한 오정석 씨, 김주영씨와 너무도 똑같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예견하고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부족한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다.



6월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지원제도24시간쟁취연대투쟁단'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에이블뉴스)

잠시라도 타인의 도움이나 보조가 없으면 안 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들이 부재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침대에서 떨어져 책상에 머리가 끼인 채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다. 아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생 장애인들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활동가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속되는 장애인들의 사망소식에 장애계는 분노하여 투쟁중에 있다.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 초기에 장애계에서 외친 것이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우는 아이 젖 주듯 장애인이 한 명씩 희생당할 때 마다 조금 주고 무마하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인들은 또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고 죽어 갈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이 죽어가야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 할 것이며,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 줄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근육, 호흡기 장애인과 같이 상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유형의 경우는 독거 특례나 취약계층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활동보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호흡기 착용 장애인은 호흡기가 빠지거나 호흡기 작동에 오류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분 안에 뇌사상태가 된다.

부디, 바라는 바 돈 몇 푼에 한 인간의 생명이 예견된 죽음을 맞지 않길 바란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지 정부의 책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가운데 살아 남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오와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사람에 대한 연구와 고민없는 장애학은 공학적 논리일 뿐

『장애학의 쟁점』

글 이찬우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장애인 당사자가 투쟁이나 정책제안을 하는데 사회모델은 하나의 커다란 무기가 되어 엄청난 당위성과 힘을 제공하였다. 장애 개념을 손상(impairments)과 장애(disability)로 분리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이고 완전한 참여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되는 것이야말로 장애라는 단순한 명제가 그간의 장애운동 패러다임을 뒤집었고 갑을관계를 역전시켰다. 이 책 『장애학의 쟁점-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Tom Shakespeare 지음, 학지사 출간, 2013)은 사

회모델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를 서술하고 그 모순점을 지적하여 우리가 신성(?)시하는 무장애(barrier-free)를 비판하고 정치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산전진단, 치료문제, 인락사, 자립생활의 한계, 비장애인의 역할 등 장애계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용감하게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의 다양한 각도의 사고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능력에 감탄했다. 이런 다양성을 표현하고 수용하는(비판은 받았지만) 환경에 대한 부러움도 있다. 대중의 의견과 다른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표현하는 자는 매장당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환경임에는 분명하다. 어쩌면 장애학에 대한 가슴 깊은 성찰 없이 그리고 논란의 과정 없이 엑기스만 머리로 받아들인 한국의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장애인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만 보였을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 의료적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그럴수록 장애는 점점 더 사회 속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낙인이 찍혀 번두리로 땅속 아래로 내몰렸다.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피해의식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뒤집어 보는 개안(開眼) 이상의 사상적 충격을 준 것이 장애학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서는 그랬었다. 하지만 학문의 역사성이 짧고 전문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대 아닌 반대를 위한 단순 목적 사용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다. 장애학이란 기존의 이론과 현상들을 뒤집거나 비틀어보는 학문이고 매우 역

동적이고 백인백색 이상의 다양성을 가지는 것임에도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주입하듯 밀어 넣는 폐단에 매우 위험한 불안을 느꼈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마다 새겨어진 문장들이 매우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음에도 우리는 그저 낱말 하나하나의 의미에만 함몰되어 의미를 단정하여 왜곡되어진 사례들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장애운동도 철학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탐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에 대한 연구와 고민없는 장애학은 공학적 논리일 뿐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열심히 외우면 최고였던 주입식 폐단에 익숙해져 있다. 그 결과로 생각하고 제시하고 타협하고 인정하고 조율하는 토론문화에는 아주 뒤처지게 되었다. 이제는 장애와 관련된 어떠한 주제의 의견에도 경청과 인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는 성숙됨이 더욱 더 토론하는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다고 되면서도 우리와 다른 논리와 시각으로 다가오면 우리 또한 차별보다 더 심한 응징을 하는 이중적 모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장애학의 그늘에 있을 수가 있다.

철학적인 개념 없이는 이분법적인 와해가 되고, 다양성의 개념을 해치게 된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대안없는 맹목적인 반대는 또 다른 기형적인 의료모형을 탄생시킬 것이다. 법정장애가 15개의 유형으로만 나뉘어진 것도, 기계적인 사정표만으로 단순하게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모형을 흉내 낸 의료모형이다.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모른척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그 요구를 단순 획일화하는 꿈수 또한 의료모형적 발상이다.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렬한 저항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다수 장애인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다수결 원칙의 의사결정도 사회모형에 위배되는 것이다. 소수에 대한 무배려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뒤집어보기가 필요하다.

장애는 개성이고, 획일성을 거부하는 고유함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저자처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어차피 사회모형을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 비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상향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의 장애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한국의 장애학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서명 『장애학의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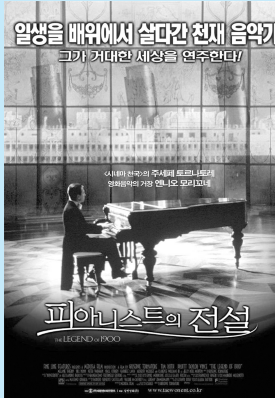
출판사 학지사(2013)

저자 Tom Shakespeare 저, 이지수 역

유한하지만 무한한 행복이 있는 삶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글 김병민 모니터단원, 지체1급장애인



태어나 한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하고 배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바다와 해상운송에 트라우마가 생긴 터라 소름이 돋네요.

영화의 주인공은 호화유람선에 버려진 아이, 아이를 발견한 해가 1900년이라 이름도 나인틴 헌드레드(1900)입니다. 배의 화부(火夫) 손에 자라다 우연히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 유람선의 재즈피아니스트가 됩니다.

1900은 피아노 연주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1900은 역술가처럼 승객들을 관찰하고 그 표정에서 느낀 인상을 피아노로 표현합니다. “저 여자 봤지?” “틀림없이 젊은 애인과 짜고 남편을 죽인 거야. 보석을 훔쳐 도피 중이고. 지금 연주하는 이 음악 같지 않나?” 바로 그때 피아노의 즐거운 선율은 갑자기 긴장감 도는 슬픈 멜로디로 바뀝니다.¹⁾

재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소문은 재즈의 창시자인 젤리 롤 모턴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모턴은 배를 타고 주인공과 피아노 대결을 벌입니다. 1900은 모턴이 연주한 곡을 똑같이 연주해냅니다. 관객들은 식상하다고 야유를 보내지만, 정작 모턴은 하얗게 질립니다. 1900이 템포가 빠른 복잡한 변주곡을 한번만 듣고도 정확히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레인맨』(1989)의 모델이 된 자폐성 장애인 김 픽은 미국의 우편번호부를 통째로 외우고 읽은 책 1만여 권의 내용을 거의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뇌성마비 장애인 레슬리 램키는 아무리 길고 복잡한 곡도 한번만 들으면 피아노로 100% 재현합니다.²⁾ 즉 비범한 기억력을 소유한 1900은 자폐성 장애인중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savant)였던 것입니다.

그가 끝내 배를 떠나지 않고 노후된 배와 함께 삶을 마감하는 것(공해상에서 폭발)도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자폐증을 뜻하는 영어 autism은 그리스어 autos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는 '자기 자신'을 뜻한다고 합니다.³⁾ 1900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기 안의 세계에서 살다 갔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88개야. 건반들로 만드는 음악은 무한하지. 하지만 배에서 내리려고 했을 때 수백만 개의 건반이 보였어, 너무 많아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같은 수백만 개의 건반...”

1900은 유한한 건반으로 훌륭한 음악을 무수히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한한 빌딩수, 무한한 자동차들, 끝없는 주기변동과 전쟁... 온통 무한 투성이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 육지의 삶은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멸망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한한 자기 세계에 머문 1900의 삶이 우리보다 덜 탐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뿐더러 그는 음악으로 많은 이들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영화 때문에 새삼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문해 봤습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삶들. 그 삶에는 저처럼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삶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삶일 뿐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는 동시에 행복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삶을 향해에 비유한다면 행복한 삶은 유람선처럼 해체되거나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삶이란 피아노 건반처럼 유한하지만 그 유한한 동안은 무한한 행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운동은 그런 삶을 위한 시도입니다.

뱀꼬리) 영화음악이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 1928~) 였습니다. 어쩐지 일주일 넘도록 머릿속에서 주제곡이 떠나지 않더라니...

영화정보	피아니스트의 전설, 2002년		
감독	쥬세페 토르나토레	출연	팀 로스

1) 1900처럼 이미지를 음향화하는 능력은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intersensory translation)인데, 예컨대 이미지를 음으로 혹은 음을 색채감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실제로 있다(편집자주)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0821&cid=40942&categoryId=32750> (두산대백과사전)
 3)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D%8F%90%EC%A6%9D>(위키피디아)

마음 일기

UCLA에서의
마지막 수업¹⁾

글
이법재
인권포럼 전대표

LA에 소재한 UCLA에는 ‘Disability Studies’ 라는 마이너 코스가 개설되어 있는데 전공과가 아니라 부전공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행히 2013년 겨울학기에 ‘Perspectives on Disability Studies’ 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청강할 수 있었다. 담당 교수는 빅토리아 맥스²⁾라는 무용과 교수였다. 아마 교수의 주전공 분야가 아니어서였는지 거의 매주 다양한 외부 강사가 초빙되었고 강의는 3시간씩 총 10주간 진행되었다. 한 자리에서 미국 내의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곳의 ‘장애학’ 관련 얘기들이 미국 ‘장애학’의 표준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수업에 거의 10명의 장애관련 교수/활동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강의가 미국 ‘장애학’의 한 표준적인 사례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수업은 초빙강사들의 강의가 한 시간 정도로 진행되고 이어서 두 시간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시간의 토론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강의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데다 사전에 관련 자료도 제공되니까 말을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쉬웠다. 그러나 토론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데 화제가 여기저기로 튀고 하니까 내 짧은 영어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의 내내 이어진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정체성으로서의 장애’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우리사회의 장애관련 논의를 ‘사회경제적 차별로서의 장애’라고 부른다 할 때 아주 대비되는 느낌을 준다. 물론 미국의 장애학 관련 연구에서도 ‘빈곤’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빈곤과 장애와의 관련성은 이곳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관심의 초점이 사회경제적 차별의 해소에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이들은 장애라는 표면 아래 숨어 있는 조금은 더 미묘하고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에 주목한다. 특별히 과학의 발달에 따른 정신, 신경학, 유전자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그 사회적, 도덕적 경계³⁾가 탐색된다.

개념이란 대부분 어떤 권력관계를 내포하는데 ‘정상/장애’라는 개념쌍과 ‘장애/비장애’라는 개념쌍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개념쌍이 ‘유전자 정상/이상’에 대항하여 제시되는 ‘유전자적 대표성/유전자적 다양성’이란 개념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인간이 가진 많은 장애와 자폐 등이 유전자나 신경의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통 우리는 이를 유전자적 신경학적 정상/결함이라는 개념쌍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장애학은 이를 유전자적/신경학적 대표성/상투성/진부성(genetic typical) 대 유전자적/신경학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이라는 개념쌍으로 전환해 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가 사회적 현상인 한에서 ‘장애’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장애인 개개인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현상학적 질문은 ‘장애라는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기도 하다. 이를 사회와 개인, 혹은 유럽과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분별법으로 일별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구태의연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지난 미국 대선에서 그는 미국의 전통적 주류인 남성/대졸/백인들에게서 진 표를 여성/인종적 소수자/동성애자 등에게서 만회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진보 주류정치는 이미 정체성의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비전문가의 눈에 현재의 미국 주류 진보정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경제적 정치와 정체성의 정치의 연합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또 다르다. 우리의 정치사에서 전통적 의미의 계급정치는 필요한 만큼도 발현되어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미국식 정체성의 정치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지연된 사회경제적 정치의 정상화’라는 오래된 과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연된 것들은 결코 순수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변형되고 육화된 형식으로 오게 될 것인데 ‘정체성의 정치’는 그 변형과 육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이 글은 2013년 필자가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시절 장애학 스터디에 참여한 경험을 요약한 글이다(편집자)

2) <http://www.victoriamarks.com/>

3) 하루는 이곳 UCLA 병원부속 유전자검사센터 소속 교수의 태아 유전자검사와 장애에 관한 강의를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센터에서 실행된 태아 유전자검사서에서 다운증후군 연관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된 태아의 70-90%(경험적 수치이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가 중절수술로 이어진다고 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장애인당선자 현황(11명)

(정보출처 : 중앙선거위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명부)

선거구 / 정당	당선인	경력
서울시 새누리당	 <p>박마루</p>	(현)나사렛대학교 협동교수 (전) KBS 2TV 사랑의 가족 MC
서울시 새정치민주연합	 <p>우창윤</p>	(현)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현) 오크힐스 광주요양원 대표
부산시 새누리당	 <p>김남희</p>	(전) 금정구의회의원 (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조정실무 위원

<p>광주시 새정치민주연합</p>	 <p>서미정</p>	<p>(전)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현)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대표</p>
<p>울산시 새누리당</p>	 <p>문병원</p>	<p>(현) 밝은미래복지재단 이사 (전)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울산선대위 선거대책위원장</p>
<p>대전시 새정치민주연합</p>	 <p>구미경</p>	<p>(현)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표 (현)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대전본부 서구 부지부장</p>
<p>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p>	 <p>김광성</p>	<p>(현) 대한장애인골프협회중앙회장 (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p>

<p>강원도 새누리당</p>	 <p>이정동</p>	<p>(현) 대곡 장학회 회장 (현) 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p>
<p>전라남도 새정치민주연합</p>	 <p>박철홍</p>	<p>(전) 전남 장애인 론불연맹회장</p>
<p>경상북도 새누리당</p>	 <p>김정숙</p>	<p>(현)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장 (현) 사)칠곡군장애인협회 대표이사</p>
<p>제주 새누리당</p>	 <p>유진의</p>	<p>(전)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 (현) 한국장애인경제협회 제주협회 부회장</p>